



**15** 시드니, 멜번 등 주요 대도시에서 카지노 등의 사행성 산업에 자신의 돈을 모두 소진하지 말 것.

여권을 담보로 사채를 쓰는 것은 여권법 위반

**16** 길에서 음주를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을 명심할 것.

**17** 지인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집을 대신 운반해 주거나, 타인의 물건을 본인 명의의 우편으로 송부하는 등의 행위는 매우 위험함.

최근 이러한 부탁을 받아 운반하는 집에서 마약 등의 발견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18** 사람이 많은 곳에서 지도를 펼칠 경우, 범죄자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19** 호주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것.

**20** 퀸즐랜드(브리즈번)와 빅토리아(멜번)의 모든 도로와 기타 주의 고속도로에서 히치하이킹은 불법임.

**21** 사진촬영 금지구역에서 사진촬영을 하지 말 것.

**22** 호주는 '물 부족 국가'이므로 언제나 물 절약을 생활화 할 것.



# AUSTRALIA WORKING HOLIDAY

## 3

### 떠나기 전 준비사항



비자 신청 | 보험 가입 | 항공권 구입 | 국제면허증 발급 | 기타 참고사항

# 3 떠나기 전 준비사항

## 비자 신청



###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개

**신청기간** : 연중 신청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Online Applications –Working Holiday Visa  
 신청 <https://online.immi.gov.au/lusc/login>



워홀가이드-온라인 비자

오프라인 Form 1150, Application for Working Holiday Visa  
 신청 <http://www.border.gov.au/Forms/Documents/1150.pdf>



워홀가이드-서면신청

※ 온라인 비자 신청이 더 빨리 처리됨

### 비자 신청 비용

온라인 신청 시 AU\$440(2017. 7. 1 부터는 \$390)이며,  
 비자 신청을 취소해도 환불 불가. 오프라인 신청시 AU\$80 추가



**쿼터제한** : 선발인원 제한 없음

### 기본 자격 요건

- 대한민국에서 발급한 여권 소지
- 비자 신청 및 비자 발급 당시 호주 외부에 체류
- 비자 신청 시 연령이 만18세 이상 만30세 이하
- Work and Holiday 비자(subclass 462)로 호주에 입국한 적이 없을 것
- 체류 기간 동안 부양 자녀를 동반하지 않을 것
- 재정요건 충족 : 일반적으로 AU\$5,000 및 호주 출국 비행기표를 소지하거나 구입할 자금 증명
- 건강 및 신원 조회 요구조건 충족
- 호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호주의 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

##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개

###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주요 특징

- | 평생 1회에 한해 발급 가능
- | 입국 유효기간 : 비자 발급 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  
 2016년 5월 1일 비자 승인을 받으면 2017년 5월 1일 전까지 호주 입국 가능하나 한국 출국일이 아니라 호주 입국일 기준임을 주의
- | 체류기간 : 호주 입국일로부터 12개월  
 2016년 7월 1일 입국했다면 2017년 6월 30일까지 유효 (비자 승인 레터에서 확인 가능)
- | 여학연수 : 총 4개월(17주) 이상 불가  
 (단, 4개월 범위 내에서 여러 기관에서 연수하는 것은 가능)
- | 비자 유효기간 동안 입·출국이 자유로운 복수 비자
- | 취업조건 :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면허나 자격을 요구하는 업종의 경우, 호주에서 인정되는 면허·자격증이 필요하며 의료, 유아 및 노약자 보호 시설에서 일할 경우 별도의 건강검진 필요
- |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이상 근무 불가



### 온라인 비자 신청

#### 비자 신청의 개요



인터넷 비자 신청 서류작성

- 여권잔여 유효기간 6개월 미만 신청불가(여권번호, 발급일, 발급국가 등 기입)
- 해외 사용가능 신용카드 확인



비자 접수 완료

- TRN(진행번호) 메모
- 헬스폼(Referral Letter)



지정병원 신체검사

- 신체검사 비용 (15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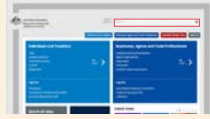
TRN(Transaction Reference Number)번호는 추후 비자진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문의 메일을 보낼 때 필요함.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개

비자 신청 절차

1 메인화면(www.border.gov.au)

\* 검색창에 Working Holiday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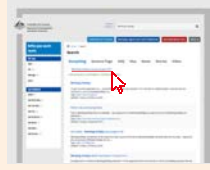


2 검색결과 중

'Working Holiday' visa(subclass 417) 클릭

1 워킹홀리데이 안내  
www.border.gov.au/visa/pages/417-working-holiday.aspx

2 워킹홀리데이 온라인 신청  
www.border.gov.au/Trav/Visa/Apl/Working-Holiday



3 웹페이지 내 'Apply Now' 클릭

\* 비자관련 주의사항을 반드시 읽어볼 것.



4 계정을 신규 생성한 후 로그인하여  
비자 신청 완료

- 여권상의 개인신상정보(영문성명, 생일, 성별, 출생국가 등) 및 해외사용 가능 신용카드 필요.
- 헬스폼(Referral Letter)을 출력하여 신체검사 시 지참
- TRN(Transaction Reference Number)는 반드시 기록하여 별도 보관할 것.



비자 신청 관련 유의사항

- 비자 신청 시 입력하는 영문이름은 반드시 여권과 일치할 것.
-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것.
- 범죄 경력이 있거나, 타 국가에서 입국 거절된 사실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서에 명기.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개

신체검사

신체검사 지정병원(Panel Doctors)

신촌세브란스병원

02-2228-5808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2호선 신촌역 3번 출구)

강남세브란스병원

02-2019-1209 서울 강남구 도곡동(3호선 매봉역)

삼육의료원

02-2249-3511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1호선 회기역 2번 출구)

부산해운대백병원

051-797-0370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35(2호선 장산역 2번 출구)



워킹가이드-세브란스신



워킹가이드-세브란스강



워킹가이드-삼육의료원



워킹가이드-부산해운대



신체검사 관련 유의사항

- 비자 신청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신체검사 완료하지 않으면 비자 승인이 거부 될 수도 있음.
- 검사 전 과식, 과음 삼가.
- 여성은 생리가 끝난 후 검사 받는 것이 권장됨.
- 안경이나 렌즈를 사용하면 지참하고 방문.



신체검사 결과는 온라인 비자 신청이 끝난 후 병원에서 호주이민부(또는 주한 호주대사관)으로 바로 송부되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검사결과가 본인의 주소로 배달된 경우에는 봉투를 열어보지 말고 주한 호주대사관으로 바로 전달해야 함.

- evisa.WHM.helpdesk@border.gov.au
- 주한 호주 대사관(서울) : 02-2003-0100

보험 가입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호주의 의료제도는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고 **비용이 상당히 비싼편에 속함**.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하거나 이를 염려하여 병을 키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됨. 따라서 사전에 보험에 가입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것.

반드시 출국 전 가입

보험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경우, 출국 전 한국에서 가입해야 보험이 유효하며 호주 내에서는 국내 보험사 상품에 가입할 수 없음.

- 감기 등 간단한 진료의 경우에도 \$70 이상의 진료비가 청구되며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1천 달러 이상이 청구됨.
- 보험료는 보장되는 한도에 따라 17만원 ~ 65만원 정도 수준.

호주 현지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의 경우 상당히 고가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병원 진료 시 이용 방법

보험사에 따라 이용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개인이 진료비를 먼저 납부하고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상 신청.

보험사에 따라 보험사에서 지정하고 예약한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병원에 방문하기 전 미리 보험사에 보상 가능 여부 확인 필요.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이 있거나 위험한 운동을 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



병원진료 사례

병원진료 사례

워홀러 B군은 2015년 호주에 입국해서 빅토리아주의 워넘불이라는 곳에서 세컨비자를 따기 위해 육가공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음. 어느 일요일 새벽 B군은 숙소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멜번의 병원으로 헬기 이송되었으며 그 다음 날인 월요일에 두개골을 절제하고 뇌출혈 치료 수술을 받음. 약 두달 후에는 개봉된 상태이던 두개골을 봉합하는 2차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고 회복한 후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됨.



그런데 B군은 한국에서 호주로 올 때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근무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었기에 Work Cover에서 보상을 받을 수도 없어 병원비와 간호를 위해 호주에 입국한 부모님의 체류비 등은 온전히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몫이 됨. B군이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던 병실은 하루 \$4,300이 소요되는 집중치료실이었으며 전체 병원비는 약 12.5만 달러에 이룸. B군은 빅토리아주 워홀러상담원, 호주에 살고 계신 친척분의 도움 및 각 교민단체 및 커뮤니티 등의 자발적인 성금 모금으로 어느 정도 병원비를 납부할 수 있었으나 병원비 잔액은 약 8만불에 달함. 앞으로 매월 일정액을 분납할 예정임.



**항공권 구입**



**항공권 구입시기**

한국인에 대한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승인율은 약 97~98%로 높은 편이나 거절될 경우를 대비하여 비자가 승인이 되고 난 후 항공권을 구입하는 것이 좋음. 일부 저가 요금의 경우 취소나 변경이 아예 불가하거나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음.

명절이나 휴가철 등 성수기, 비수기를 구분하여 구매하여야 하며 호주의 경우 12월~1월이 극성수기여서 항공권뿐 아니라 숙소 비용도 비싼 편임.

미리 예약하는 것이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나 간혹 출발일이 임박하여 좌석이 남는 경우 할인율이 높은 경우도 있음.

**기타 고려 사항**

직항/경유 여부, 환불 가능 여부 등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며 항공권 자체 가격 외에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세금, 수화물 허용 무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

요금이 조금 비싸더라도 직항을 이용할 것인지 저렴한 경유를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경유인 경우 경유지에서 연결 비행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시간 및 탑승구 확인을 잘 할 것.

항공기 기내 반입물품 및 호주반입 가능 휴대물품(술, 담배, 식품, 의약품등) 정보를 확인할 것.

**국제 면허증 발급**

**준비물**

여권, 운전면허증, 여권용 또는 반명함판 사진 1매, 수수료



**신청방법**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지정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

**기타 참고사항**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를 통한 각종 정보 취득 및 상담**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연락처

홈페이지	whic.mofa.go.kr
카페	cafe.naver.com/wohofriends
전화	1899-1995
이메일	workingholiday@mofa.go.kr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37 도렴빌딩 605호

워킹홀리데이 관련 국가(지역)별 정보 제공 및 상담(이메일, 전화, 방문 등)

관련 정보는 인포센터 홈페이지 참고

현재 세계 각국에서 워홀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해외 통신원 게시물을 통해 간접 경험 가능.(cafe.naver.com/wohofriends)

**워킹홀리데이 소개 동영상 시청**

워킹홀리데이 허와 실 동영상

<http://whic.mofa.go.kr/common/images/video.html>

샘 해밍턴과 함께 하는 호주 안전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F67HAhCLANy>

